

서울특별시 서울도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길영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465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6년 02월 09일

발 의 자: 김길영 의원(1명)

찬 성 자: 김동욱, 김영옥, 김영철,
김용호, 김원태, 김태수,
김혜영, 남궁역, 남창진,
문성호, 윤기섭, 윤종복,
이상욱, 이성배, 이효원,
임춘대, 정지웅, 최민규,
허·훈, 홍국표 의원(20명)

1. 제안이유

- 현행 조례에서는 서울도심 기본계획 사업의 개념과 범위를 제6조에서 명확히 정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례 제7조에서 이를 제4조로 잘못 인용하고 있어 조문 간 체계 정합성이 저해되고 있으므로 이를 현행 조례의 체계에 맞게 정정할 필요가 있음
- 또한, 일부 조문에 사용된 용어가 관련 법령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표현과 상이하므로 이를 재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서울도심 기본계획 사업의 인용 조항을 제4조에서 제6조로 변경함 (안 제7조)
- 나. ‘서울특별시도시개발특별회계’를 ‘서울특별시 도시개발특별회계’로 변경함 (안 제8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해당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 서울도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서울도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중 “제4조”를 “제6조”로 한다.

제8조 중 “서울특별시도시개발특별회계”를 “서울특별시 도시개발특별회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시책 반영) 시장은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 시 <u>제4조</u>의 서울도심 기본계획사업을 반영할 수 있다.</p> <p>제8조(재원의 확보) 서울도심 기본계획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일반회계 이외에 <u>서울특별시도</u> <u>시개발특별회계</u>를 사용할 수 있다.</p>	<p>제7조(시책 반영) ----- ----- <u>제6조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제8조(재원의 확보) ----- 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</u> <u>도</u> <u>시개발특별회계</u>----- --.</p>

서울특별시 서울도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서울도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도심 기본계획 사업의 개념과 범위를 제6조에서 인용하고 있으므로 제7조(시책 반영)에서 잘못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“제4조”에서 “제6조”로 정정하여 조문 간 체계 정합성을 확보하고, 제8조의 용어를 통상적 표현으로 수정(서울특별시도시개발특별회계 → 서울특별시 도시개발특별회계)한 것으로 자구수정 등 조문정비에 해당하여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

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계분석관 김 경 명

☎ 02-2180-7954

e-mail : kimkmi0809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